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재건축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를 위해 도입된 재건축부담금 제도 시행(2006.9.)후 국가귀속분의 지자체 배분을 위해 마련(2010년)된 평가지표가 두차례 부과유예(2012.12.18.~2017.12.31.) 등으로 장기간 활용되지 못해 현실화가 필요함에 따라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를 개선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재건축부담금 국가징수분 지자체 배분 평가기준 개선(안 제3조)

재건축부담금 제도가 2018년부터 재시행되었고,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“합헌” 결정(2019.12.27.)으로 시장의 합법성 논란이 해소되어 재건축부담금 부과·징수가 금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국가귀속분(50%)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거복지기반시설 설치수준 등 5개 평가항목을 4개 평가항목으로 조정하고, 각 지표별 가중치를 상호 조정하여 주거복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을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6. 3. ~ 7. 13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사항”을 “지방자치단체별
정책추진 기반조성 노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
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20퍼센트”를 “1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
항 제2호 중 “20퍼센트”를 “30퍼센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20퍼센
트”를 “45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
제5호를 삭제한다.

4.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추진 기반조성 노력 : 15퍼센트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징수금의 지원을 위한 평가 기준 및 지원절차 등) ① (생략)	제3조(징수금의 지원을 위한 평가 기준 및 지원절차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”이라 함은 <u>다음 각 호의 사항을</u> 말한다.	②----- ----- <u>지방자치단체별 정책 추진 기반조성 노력</u> ----- -----.
1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(이하 “공공주택”이라 한다) 등 지방자치단체별 주택사업의 실적	<삭 제>
2. 재건축부담금의 활용 실적 및 운용계획	<삭 제>
③국토교통부장관은 「주택도시보증법」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금(이하 “주택도시보증금”이라 한다)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액을 정한다. 다만, 국	③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중치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조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 수준 : <u>20퍼센트</u>	1. ----- <u>10퍼센트</u>
2.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실태 평가 결과 : <u>20퍼센트</u>	2. ----- <u>30퍼센트</u>
3.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증진 노력 : <u>20퍼센트</u>	3. ----- <u>45퍼센트</u>
4. 공공주택 등 지방자치단체별 주택사업의 실적 : <u>30퍼센트</u>	4.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추진 기반조성 노력 : <u>15퍼센트</u>
5. 재건축부담금의 활용 실적 및 운용계획 : <u>10퍼센트</u>	<삭 제>
④ ~ ⑨ (생략)	④ ~ ⑨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	
연 락 처	(044) 301 - 3392